

근로장려세제의 노동시장 성과 및 최저임금제와의 관계 연구

남재량*

본 연구는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의 관계 및 상대적 실효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 두 제도는 모두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 지원을 위해 고안되었으나, 이들 간의 상대적 실효성에 대한 실증적인 평가 없이 시행되고 있는 실정임.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 기여하기 위해 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음.

먼저 노동공급 효과를 보기 위해 18세미만 자녀가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와 총소득과 주택 및 재산 요건이 유사한 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음. 그 결과, 추가적인 분석결과가 있어야 보다 분명한 언급이 가능할 것이나,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노동공급 증대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음.

아울러 근로장려세제와 최저임금제의 관계 및 상대적 실효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일단 근로장려세제에 다소 유리한 증거들이 관찰되었음. 먼저 근로장려금 등과 같은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한 총소득인 경상소득을 10개의 동일한 구간으로 구분하여 각 제도 수혜자들이 어떤 구간에 주로 속하는지를 알아보았음. 그 결과,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가구들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있는 가구에 비해 2분위와 3분위의 소득구간에 집중되어 있어 근로빈곤층을 표적집단으로 삼고자 하는 목표를 비교적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근로장려금 수급 총액과 동일한 금액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임금에 정률로 보태줄 경우의 성과와 결합된다면 보다 적극적인 해석으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임.

주요용어 : 근로장려세제, 최저임금제, 근로장려금, 실효성

I. 들어가며

- 본 연구는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국의 근로장려금제도(EITC)의 성과를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근로장려세제의 목적은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데에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
- 이처럼 이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근로의욕 저하라는 부작용을 억제하여 근로를 유인하고 이를 통해 이들 가구의 소득을 높이려는 노력을 제도에 도입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짐
- 따라서 이 제도를 시행한 후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가 실제로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였는지에 대한 평가가 뒤따라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근로장려금제도와 최저임금제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는 것도 본 연구의 또 다른 목적임
 - 저소득 근로자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근로장려금제도보다 더 오래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최저임금제도를 들 수 있음
 - 두 제도 모두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 향상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이나, 전자는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반면, 후자는 개인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가 존재함
 - 원래 저소득이나 빈곤 여부는 생계를 함께 하는 가구를 단위로 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근로장려금의 성과를 분석함에 있어 최저임금제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는 것이 보다 유익할 수 있음
 - 정책 지원 대상의 중첩 여부 및 동일한 자원을 사용하여 지원할 경우 어떤 제도를 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인지 등과 관련된 사항들을 살핍으로써 두 제도의 상대적 실효성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임

II. 한국의 근로장려세제와 이에 대한 논의

1. 한국의 근로장려세제

가. 근로장려세제의 개념 및 연혁

- 근로장려세제의 개념
 -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급형 세액 공제(tax credit) 제도
- 근로장려세제의 연혁
 - 2005년 도입하기로 결정
 - 2006년 세법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
 - 2008년부터 시행
 - 2009년 처음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아 지급
 - 2012년부터 무자녀 부부가구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부양자녀의 수에 따라 총소득 기준금액과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차등을 두어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
 - 2015년부터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최대 2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확대

나.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

- 제도 시행 시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으로 ① 총소득요건, ② 부양자녀요건, ③ 주택요건 ④ 재산요건을 수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요건충족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이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교육) 3개월 이상 수급자, 외국인은 수급대상에서 제외됨

<표 2-1>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구 분	내 용
① 총소득요건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② 부양자녀요건	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 이상 부양세대
③ 주택요건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소규모주택 한 채 소유세대
④ 재산요건	소규모 주택을 포함한 재산합계액 1억원 미만세대

① 총소득요건

- 근로장려세제의 적용을 받으려면 근로장려금 지급년도 전년도에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즉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총소득 기준(연 1,7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근로장려금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
- 총소득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소득으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 금액을 합산하되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근로·연금·이자·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함
 - ※ 퇴직·양도소득은 부정기적인 소득으로 총소득 범위에서 제외함

② 부양자녀 요건

-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근로장려금 지급년도 전년의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부양자녀가 당해연도중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 모두 부양자녀로 인정

- 부양자녀는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중증장애인인 부양자녀는 연령제한이 없음
- 다만, 부양자녀는 친자녀를 원칙으로 하되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와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장애 등으로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자녀·형제자매도 부양자녀가 될 수 있음
- 한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될 수 없으며, 이혼 등의 경우 부모 한쪽의 부양자녀만 될 수 있음

③ 주택 및 재산 요건

- 근로장려세제의 적용을 받으려면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 단, 기준시가 5,000만원이하 소규모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는 무주택으로 간주하여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음
- 재산요건은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소규모주택을 포함하여 토지·건물·자동차·전세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 재산의 소유기준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동일한 근로장려금 지급년도 전년 6월 1일로 함

다. 근로장려금의 산정

- 2008년을 대상으로 2009년에 지급한 때부터
 - 부부합산 근로소득에 구간별로 정해진 비율을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산정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120만원
 - 점증구간(0~800만원) : 근로소득 × 점증률(15%)
 - 평탄구간(800만원~1,200만원) : 최대급여액 120만원
 - 점감구간(1,200만원~1,700만원) : (1,700만원 - 근로소득) × 점감률(24%)
- 2015년 이후
 - 제도가 확대 개편된 2015년 이후의 근로장려금 산정은 <표 2-2>와 같음

<표 2-2>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6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600분의 77
	6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77만 원
	900만 원 이상 ~ 1천300만 원 미만	77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400분의 77
홀벌이 가구	9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900분의 185
	900만 원 이상 ~ 1,200만 원 미만	185만 원
	1,200만 원 이상 ~ 2,100만 원 미만	185만 원-(총급여액 등-1,200만 원)×900분의 185
맞벌이 가구	10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000분의 230
	1000만 원 이상 ~ 1,300만 원 미만	230만 원
	1300만 원 이상 ~ 2,500만 원 미만	230만 원-(총급여액 등-1,300만 원)×1,200분의 230

자료 : 국세청

○ 2015년 이후 근로장려금 산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2-1>과 같음

<그림 2-1> 가구유형과 총급여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자료 : 국세청

라. 근로장려금 지급 실적

- 근로장려금의 지급은 다음의 <표 2-3>에서 보듯이 지급 가구수와 지급 금액이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2008년에 590,720 가구를 대상으로 453,731 백만 원을 지급한 것(실제 지급시점은 2009년)을 시작으로 2015년 1,378,953 가구에게 1,028,049를 지급하기까지 지급 가구수와 지급액이 모두 증가추세를 나타냄
 - 특히 제도가 확대 개편되었던 2014년의 증가가 두드러짐

<표 2-3>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실적

(단위 : 가구, 백만원)

	합계 (1=2+3)		근로장려금 (2)		자녀장려금 (3)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가구수	금액
2008년	590,720	453,731	590,720	453,731	-	-
2009년	566,080	436,903	566,080	436,903	-	-
2010년	522,098	402,003	522,098	402,003	-	-
2011년	752,049	614,021	752,049	614,021	-	-
2012년	783,397	561,761	783,397	561,761	-	-
2013년	846,018	774,492	846,018	774,492	-	-
2014년	2,356,670	1,714,460	1,281,856	1,056,562	1,074,814	657,898
2015년	2,305,297	1,588,706	1,378,953	1,028,049	926,344	560,657

자료 : 국세통계연보, 2013년, 2016년

2.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

- 근로장려세제 도입이 저소득가구의 노동공급 및 후생에 미치는 영향 분석 (송헌재·전영준, 2011)
- 근로장려금 지급의 근로유인 효과 분석 (송헌재, 2012)
 - 이 연구는 근로장려금 지급에 따른 저소득 가구의 근로유인 효과 파악을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국내외 기존 연구들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재정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이중차분모형을 통해 근로유인 효과를 계량경제적으로 추정하고 있음
 - 근로장려금이 소득구간별(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한 점증구간, 평탄구간 및 점감구간)로 가구의 근로자 수와 근로 개월 및 근로소득에 미친 효과를 추정하고 있으며,
 - 근로장려금 미수급가구의 수급요건 변화를 통한 추정결과의 강건성도 검토하고 있음
- 근로장려세제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연계방안 (김재진·이혜원, 2012)
- 근로장려금 지급의 고용성과 평가(남재량, 2013)
 - 이 연구는 근로장려세제를 포함한 임금보조금이 실제 고용에 미친 성과를 경험적으로 평가하고 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기존 연구들에 대한 서베이와 가용한 자료들을 사용한 계량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식별을 위한 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이중차분을 통한 정책효과 식별을

- 위한 기준 마련한 뒤,
- 근로시간 변화를 통한 가구의 노동공급과 가구원 중 취업자 비중 변화를 통한 가구의 노동공급 변화를 분석하고 있음
- 근로장려세제가 근로유인에 미친 효과 분석(현보훈·염명배, 2014)
- 이 연구는 한국의 근로장려세제가 근로유인에 미친 효과 추정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국내 주요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연구와 근로장려세제 관련 기초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 이중차분법을 사용하여 근로유인 효과 추정하는 한편, 회귀단절모형을 사용하여 노동공급 효과를 분석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근로장려세제의 급여구조 및 그 변화에 대해 고찰하고
 - 한국복지패널자료와 그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인식, 근로의욕 등에 대한 특징을 분석하고 있으며,
 -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기준으로 통제집단을 구성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근로유인 효과 분석함
- 조세지출(근로장려세제) 종합·심층평가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 저소득근로자 소득보전제도 개선방안 연구 (강병구·김혜원, 2015)
- 이 외에도 최근 들어 한국의 근로장려금제도의 성과에 대한 분석이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도 이미 많이 축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III. 한국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

1. 자료

- 다양한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고 있으나 패널자료의 활용빈도가 높음
 - 한국 근로장려세제의 성과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기존의 연구들에 사용되고 있는 자료는 다양한 편이나 대체로 복지패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사용한 연구가 많고 재정패널(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나 가계조사(통계청) 자료를 사용한 연구도 있음
 - 근로장려금에 대한 분석에서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 중의 하나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가구가 이들 조사(survey)에서 많이 관찰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임
 - 그나마 복지패널은 상대적으로 관측치가 많은 편이어서 분석에 자주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본 연구는 근로장려금의 노동공급 효과 외에도 근로장려금과 최저임금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따라서 근로장려금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에 대한 분석도 가능한 자료가 요구됨
 - 최저임금을 포함한 노동시장 분석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자료로 노동패널(한국노동연구원)을 들 수 있음

- 노동패널의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조사
 - 노동패널에서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사용한 분석은 아직 찾아보기 어려움
 - 아마도 노동패널이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이를 사용한 연구가 없었을 수도 있고
 - 조사가 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관측치가 충분치 않을 것으로 보아 분석에 사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음
 - 본 연구는 관측수에서 다소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여러 차수에 걸쳐 조사를 수행한 바 있는 노동패널 상의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근로장려세제의 성과 및 최저임금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함

- 노동패널은 근로장려금에 대한 간단한 안내와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소개를 곁들여 “근로장려세제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셨습니까”라는 질문을 하고 있음
 - 받았다고 답할 경우 “지급받으신 근로장려세제 지원금은 총 얼마입니까”라고 묻고 이를 만원 단위로 답하게 함

2.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와 수금액

- 노동패널 자료에서 근로장려세제 지원금을 수급하였다고 답한 가구는 많지 않았음
 - 조사 차수별로 차이가 있지만 27~40 가구가 받았다고 응답 (표 3-1)
 - 지원받는 금액은 4만원부터 120만원까지 다양함

<표 3-1> (작년한해) 근로장려세제 지원금, 통합표본 사용

(단위 : 가구, 만원)

	가구수	평균	최솟값	최댓값
13차 조사 (2010년 조사)	27	78.4	5.0	120.0
14차 조사 (2011년 조사)	39	75.2	4.0	120.0
15차 조사 (2012년 조사)	25	78.1	9.0	120.0
16차 조사 (2013년 조사)	40	81.9	9.0	120.0
17차 조사 (2014년 조사)	29	78.3	5.0	120.0

- 노동패널 자료에서 관측수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
 - 관측수가 많지 않은 관계로 가급적 관측치의 손실을 극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
 - <표 3-1>은 노동패널에 존재하는 두 가지 유형의 표본, 즉 1998년 조사 시작 당시의 표본과 13차 조사인 2010년의 조사 시에 추가된 표본까지 포함한 통합표본을 분석에 사용할 것임
 - 2010년의 표본 추가는 노동패널이 당초 도시지역만을 대표할 수 있도록 표본을 설계하였던 상황에서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계속 조사를 실시하다보니 도시와 비도시 지역 간의 이동에 따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음
 - 이처럼 1998년 표본과 추가표본까지 함께 분석에 사용하게 되면 16차 조사의 경우 40 가구가 관측되는데, 이는 <표 3-2>에서 보듯이 1998년 표본만 사용할 경우의 관측수인 29 가구에 비해 11 가구나 더 많음
 - 다만 통합표본을 사용할 경우 통합가중치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원가구원이 사라진 가구에 대해서는 통합가중치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 관측치의 일부를 잃을 수 있음
 - 이처럼 통합가중치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본 연구는 통합가중치의 크기가 0보다 더 큰 가구들의 통합가중치의 평균을 구하여 사용하였음¹⁾

1) 이에 대한 보다 나은 가중치 부여 방법이 제시된다면 개선할 수 있음

<표 3-2> (작년한해) 근로장려세제 지원금(만), 1998년 표본 사용

(단위 : 가구, 만원)

	가구수	평균	최솟값	최댓값
13차 조사 (2010년 조사)	25	79.6	5.0	120.0
14차 조사 (2011년 조사)	29	77.3	4.0	120.0
15차 조사 (2012년 조사)	21	87.5	9.0	120.0
16차 조사 (2013년 조사)	29	71.0	9.0	120.0
17차 조사 (2014년 조사)	22	81.8	5.0	120.0

3.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의 소득분포

-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실제 소득은 그렇지 않은 가구들에 비해 2분위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음 (22.7%, 표 3-3)
 - 3분위에도 19.0%가 분포하고 있어 2~3분위에 41.7%가 위치하고 있음
 - 4~6분위 소득구간에 속한 가구도 42.9%에 이룸
 - <표 3-3>은 13차부터 17차까지의 결과들을 평균한 것이며, 각 차수별 결과들은 부표에 제시하였음
 - 다만 17차 조사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3-4>에 제시하였는데,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경상 소득이 2분위 구간에 속하는 경우가 무려 46.9%에 달함

<표 3-3>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여부에 따른 가구 경상소득(공적이전소득 제외 총소득) 분위별 분포 : 평균
(단위 : 가구수, %)

소득 10분위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평균)		근로장려금 비수급가구 (평균)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분위	4,784	6.1	1,802,564	10.0
2분위	20,342	22.7	1,787,456	9.9
3분위	19,357	19.0	1,788,804	9.9
4분위	14,492	15.9	1,793,592	10.0
5분위	15,624	15.5	1,792,467	10.0
6분위	10,623	11.5	1,797,420	10.0
7분위	6,523	6.6	1,802,903	10.0
8분위	2,174	2.3	1,804,445	10.0
9분위	0	0.0	1,809,935	10.1
10분위	473	0.4	1,808,583	10.1

<표 3-4>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여부에 따른 가구 경상소득(공적이전소득 제외 총소득) 분위별 분포 : 17차 조사
(단위 : 가구수, %)

소득 10분위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17차)				근로장려금 비수급가구 (17차)			
	빈도	백분율	누적	누적	빈도	백분율	누적	누적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분위	1,418	1.6	1,418	1.6	1,876,967	10.0	1,876,967	10.0
2분위	41,682	46.9	43,100	48.5	1,835,539	9.8	3,712,506	19.9
3분위	9,741	11.0	52,841	59.5	1,868,451	10.0	5,580,957	29.9
4분위	9,704	10.9	62,545	70.4	1,869,710	10.0	7,450,667	39.9
5분위	21,045	23.7	83,591	94.1	1,856,311	9.9	9,306,979	49.8
6분위	3,929	4.4	87,520	98.6	1,875,204	10.0	11,182,182	59.8
7분위	1,274	1.4	88,794	100.0	1,878,196	10.1	13,060,378	69.9
8분위	0	0.0	88,794	100.0	1,877,101	10.0	14,937,479	79.9
9분위	0	0.0	88,794	100.0	1,878,765	10.1	16,816,245	90.0
10분위	0	0.0	88,794	100.0	1,879,517	10.1	18,695,761	100.0

4. 근로장려금의 노동공급 효과

- 근로장려금을 실제로 수급한 가구들에서 장려금 수급에 필요한 요건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봄
 - <표 3-5>에서 보듯이 수급 가구는 18세 미만 자녀의 수에서 모두 1명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반면 부부합산소득과 주택 및 자산 요건들은 제도에서 요구하는 수준들을 상회하는 경우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 이는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득과 주택 및 재산 평가 기준이 노동패널에서 조사하는 기준과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임

- 비교집단의 선정
 - 제도 시행에 따른 노동공급 효과를 평가하는 데에 흔히 사용되는 방법론으로 이중차분법을 들 수 있는데,
 - 이 방법을 적용하는 데에 중요한 조건은 본 연구와 같은 준실험적인 상황에서 정책 시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 외생적으로 구분된 비교집단을 선정하는 것임
 - 비교집단으로 18세미만 자녀가 없는 대신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해 필요한 다른 요건들은 노동패널 자료 상에서 근로장려금을 실제로 수급한 가구가 갖춘 것과 동일한 정도(상한)의 가구를 선정하기로 함
 - 이렇게 설정된 비교집단의 특성은 <표 3-6>에 제시하였음

- 선정된 비교집단을 사용하여 처리집단인 수급가구의 노동공급과 비교하기 위해 가구내 취업자 수 및 그 변화 등을 <표 3-7>과 <표 3-8>에 제시하였음
 - <표 3-8>에서 13차의 경우 수급가구의 취업자 수 변화(전기→당기)는 비수급 가구에 비해 감소폭이 작으며,
 - 14차의 경우 취업자 수의 증가폭이 비수급 가구의 경우보다 수급 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 15차에서 비수급 가구의 취업자 수는 미소하게 증가하나 수급 가구의 취업자 수는 거의 변하지 않고 있음
 - 이상의 분석만으로 근로장려제도의 노동공급 효과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나, 노동공급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정도의 언급은 가능할 것임

<표 3-5>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관련 변수들

(단위 : 가구, 명, 만원)

차수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여부	가구수	18세미만 자녀수	부부합산 소득	주택 (시가)	자산 (시가)
13차	수 급	39	1.63	2,732	6,529	6,529
	비수급	6,519	0.58	3,402	19,905	23,731
	전 체	6,558	0.59	3,398	19,881	23,700
14차	수 급	25	1.52	2,616	7,217	7,217
	비수급	6,624	0.57	3,578	20,861	24,099
	전 체	6,649	0.57	3,574	20,840	24,074
15차	수 급	40	1.53	3,421	8,137	7,917
	비수급	6,632	0.55	3,734	21,044	24,575
	전 체	6,672	0.56	3,732	21,008	24,525
16차	수 급	29	1.33	2,991	10,425	10,425
	비수급	6,718	0.54	3,858	21,179	24,869
	전 체	6,747	0.55	3,854	21,168	24,855

<표 3-6> 비교집단의 선정 및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관련 변수들

(단위 : 가구, 명, 만원)

차수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여부	가구수	18세미만 자녀수	부부합산 소득	주택 (시가)	자산 (시가)
13	수 급	39	1.63	2,732	6,529	6,529
	비수급	665	0.00	1,994	7,312	7,392
	전 체	704	0.09	2,035	7,304	7,383
14	수 급	25	1.52	2,616	7,217	7,217
	비수급	862	0.00	2,006	7,619	7,716
	전 체	887	0.04	2,024	7,616	7,713
15	수 급	40	1.53	3,421	8,137	7,917
	비수급	923	0.00	3,669	11,154	11,439
	전 체	963	0.06	3,659	11,119	11,393
16	수 급	29	1.33	2,991	10,425	10,425
	비수급	1,147	0.00	2,498	11,427	11,718
	전 체	1,176	0.03	2,511	11,423	11,714

<표 3-7>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와 가구내 취업자 수 및 가구내 취업자 비율

(단위 : 가구, 명)

차수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여부	가구수	가구내 취업자수	가구원수	가구내 취업자 비율
13	수 급	39	1.0	3.7	0.29
	비수급	665	0.8	2.3	0.36
	전 체	704	0.8	2.3	0.35
14	수 급	25	1.0	3.5	0.32
	비수급	862	0.8	2.2	0.35
	전 체	887	0.8	2.2	0.35
15	수 급	40	1.2	4.0	0.31
	비수급	923	1.2	2.7	0.45
	전 체	963	1.2	2.7	0.44
16	수 급	29	1.0	3.7	0.31
	비수급	1,147	0.9	2.3	0.39
	전 체	1,176	0.9	2.3	0.39

<표 3-8> 근로장려금의 취업자 수 변화 효과 : 가구내 취업자 수 및 취업자 비율 변화

(단위 : 가구, 명)

차수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여부	가구수	취업자수 전기	취업자수 당기	취업자비율 전기	취업자비율 당기
13	수 급	11	1.00	0.82	0.27	0.23
	비수급	874	0.81	0.78	0.35	0.35
	전 체	885	0.82	0.79	0.35	0.35
14	수 급	10	1.00	1.40	0.27	0.38
	비수급	953	1.11	1.15	0.43	0.44
	전 체	963	1.11	1.15	0.43	0.44
15	수 급	13	1.15	1.15	0.31	0.36
	비수급	1,161	0.91	0.92	0.38	0.39
	전 체	1,174	0.92	0.92	0.38	0.39

IV. 저소득층 지원정책으로서 근로장려세제와 최저임금제의 실효성 비교

1. 기존의 연구

○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

- 저소득가구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는 데에 어떤 제도가 보다 효과적일 것인가?
- 빈곤은 가구를 단위로 하는 문제이나, 최저임금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양자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님(Stigler, 1946)
- 근로장려세제는 가구를 단위로 하는데, (근로)빈곤의 문제는 가구가 처하는 문제이므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저임금제보다 근로장려세제가 근로빈곤층 소득지원에 우수할 가능성이 높음
- 저임금과 낮은 가구소득 간의 관계가 약화되어 왔으므로 최저임금의 인상이 저소득가구 소득 지원에 효과적이지 못함(BCG²⁾, 1995; 정진호; 남재량)
- 근로장려세제는 임금과 달리 급여세(payroll tax)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식품권(food stamp), 메디케이드(medicade),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등과 같은 정부 지원 급여의 선정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저소득가구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는 데에 있어 최저임금제 보다 효과적임(BCG, 1995)
- 최저임금제의 부작용

○ 소득분배의 개선

-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가구를 직접 대상으로 하므로 저소득가구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최저임금제 보다 소득분배 개선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

○ 경험적인 측면에서 저소득층 지원정책으로서 근로장려금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있는 연구, 특히 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연구는 찾기 어려움

- 다만 강병구·성효용(2009)는 EITC에서 요구하는 여건을 만족시킨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경우의 지니계수 변화를 측정하였음
- 그리고 실시되고 있는 당시의 최저임금에 따른 지니계수의 변화를 근로장려금 지급에 따른 지니계수 변화의 크기와 비교하고 있음
- 따라서 이들의 연구는 당시 시행되고 있던 최저임금제와 곧 실시될 근로장려금이 실제로 실시될 경우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할 정도를 평가하고 있다는 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 동일한 금액을 각기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할 경우 소득분배 개선을 분석하고 있는 것은 아님

○ 정책 시뮬레이션을 통한 평가(calibration)

2) Burkhauser, Couch and Glenn

- 전영준(2016), 전영준·남재량(2010)은 근로장려금 제도가 저소득층 근로자의 소득향상, 후생증진, 그리고 소득분배를 향상시키는 데에 효과적이라는 결과 도출
- 이는 무엇보다도 근로장려금 제도가 다른 제도들에 비해 시장친화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

2. 평가 방법론

가. 실제 소득분포 비교 분석

○ 실제 소득분포의 비교를 통한 비교 분석

-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존재 가구의 경상소득 분포를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정책당국이 목표로 하는 표적집단을 어떤 제도가 더 잘 포착할 수 있는지를 살피는 방법

나. 가상적인 상황 설정을 통한 비교 분석

○ 비교를 통한 분석

-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특정 제도의 효과를 평가할 수도 있겠으나,
- 둘 이상 복수 개의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경우의 분석은 상이한 제도들의 성과를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임
- 본 연구는 저소득층 지원정책으로서 근로장려금 제도의 성과를 최저임금제의 경우와 비교하여 평가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비교를 위한 기준으로 무엇을 택할 것인가가 분석에 있어 중요할 수 있음
- 예컨대 근로장려금 제도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최저임금제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음

○ 최저임금제를 기준으로 한 비교 분석

- 최저임금제의 성과를 기준으로 삼고 이에 비해 근로장려금의 성과가 어떠하였는지를 비교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데,
- 최저임금제도의 저소득층 지원 성과를 객관화하거나 수량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알려져 있음
- 예컨대 최저임금제 실시에 따른 소득 증가 효과만 하더라도 이를 설득력 있게 측정하는 것 자체가 여러 한계를 내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실제 임금 상승분 가운데 최저임금제 실시에 의한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나 될 것인지를 측정하는 것부터 논란의 소지가 클 수 있음

- 나아가 최저임금제의 부작용으로 고용감소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 상반된 견해와 연구결과들이 존재함
 - 따라서 최저임금제의 저소득층 지원 성과를 기준으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근로장려금의 성과를 비교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닐 수도 있겠으나, 매우 어려운 과제일 수 있음
- 근로장려금 제도를 기준으로 한 비교 분석
- 최저임금제에 비해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지원 성과가 더 가시적임
 - 일단 근로장려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면 실제 지원받은 근로장려금의 금액이 얼마인가를 저소득층 지원의 규모 또는 성과로 파악할 수 있음
 - 이 경우 이러한 근로장려금의 성과를 바탕으로 동일한 금액이 최저임금제를 통해 지원될 경우 성과를 예측하고 근로장려금의 경우와 비교하는 것은 최저임금제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비해 훨씬 더 객관적인 분석을 가능케 함
 - 따라서 근로장려금의 성과를 기준으로 이를 최저임금의 경우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근로장려금 지원금을 기준으로 한 저소득층 지원 성과 비교 분석
- 근로장려금 수혜 가구의 지원금이 얼마인지는 자료(data)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그렇다면 이러한 근로장려금 지원금의 총합을 S라 할 때, 이를 근로장려금이 아니라 최저임금의 형태로 지급한다면, 가구의 후생수준과 소득분배는 두 경우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비교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우리는 두 제도의 저소득층 지원성과를 저소득층의 소득수준 변화 정도와 경제전체의 소득분배 상태 변화 정도 등으로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최저임금 수준을 M이라 하고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개별 근로자 i 의 임금을 w_i^M 이라 하면, 아래 식을 만족하는 γ 를 구하여 최저임금 근로자에게 동일한 율로 이전함

$$S = \sum_{i=1}^n \gamma (M - w_i^M), \text{ 여기서 } w_i^M < M$$

3. 분석결과 - 소득분포의 비교 -

- 최저임금근로자가 존재하는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5분위 이하의 가구 경상소득 구간에 속하는 경우가 많으나,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의 경우와 비교하면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
- 근로빈곤(working poor)에 초점을 맞춘다면 다양한 10분위 소득구간에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

- 어 있는 최저임금근로자 가구에 비해 2~3분위의 소득구간에 집중되어 있는 근로장려금의 경
우가 표적집단 선정에 보다 유리한 것으로 보임
- 13차부터 17차까지 각 차수별 분석결과는 부표에 자세하게 제시하였음

<표 4-1> 최저임금근로자 유무에 따른 가구 경상소득(공적이전소득 제외 총소득) 분위별 분포 : 평균
(단위 : 가구수, %)

소득 10분위	최저임금근로자가 '있는' 가구		최저임금근로자가 '없는' 가구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분위	161,968	13.6	1,645,380	9.7	4,784	6.1
2분위	218,583	18.0	1,589,215	9.4	20,342	22.7
3분위	168,608	14.1	1,639,553	9.7	19,357	19.0
4분위	154,738	12.9	1,653,345	9.8	14,492	15.9
5분위	121,262	10.1	1,686,829	10.0	15,624	15.5
6분위	106,041	8.9	1,702,002	10.1	10,623	11.5
7분위	95,982	8.0	1,713,445	10.2	6,523	6.6
8분위	75,797	6.2	1,730,821	10.3	2,174	2.3
9분위	51,288	4.2	1,758,647	10.4	0	0.0
10분위	48,126	4.0	1,760,929	10.4	473	0.4

*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경우 <표 3-3>에 있는 내용을 비교를 돕기 위해 그대로 옮겨온 것임

- 이제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 가운데 최저임금근로자가 존재하는 가구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아봄
 -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가구 가운데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존
재하는 가구는 13~17차 평균 14.6%임 (표 4-2)
 - 반면 근로장려금을 수급하지 않은 가구 가운데 최저임금근로자가 존재하는 가구는 13~17차
평균 6.6%에 불과함 (표 4-3)
 - 전자(14.6%)가 후자(6.6%)에 비해 두 배를 넘을 정도로 격차가 큼

<표 4-2>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가운데 최저임금근로자 유무 가구
(단위 : 가구수, %)

최저임금 근로자	평균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있음	13,772	14.6	19,616	27.6	13,166	11.9	13,832	17.9	8,704	7.0	13,543	15.3
없음	80,620	85.4	51,543	72.4	97,696	88.1	63,439	82.1	115,175	93.0	75,250	84.8

<표 4-3> 근로장려금 '비'수급가구 가운데 최저임금근로자 유무 가구

(단위 : 가구수, %)

최저임금 근로자	평균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빈도	비율										
있음	1,188,621	66	1,152,494	67	1,174,332	66	975,513	54	1,345,851	74	1,294,913	69
없음	16,799,546	93.4	15,988,137	93.3	16,507,729	93.4	17,148,210	94.6	16,972,806	92.7	17,400,848	93.1

- 관점을 달리하여 최저임금근로자가 존재하는 가구인가 여부에 따른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봄
 - <표 4-4>와 <표 4-5>는 각각 이들을 정리한 것임
 - 무엇보다도 최저임금근로자가 있는 가구 가운데 근로장려금을 받는 가구는 13~17차 평균 1.1%에 그칠 정도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함

<표 4-4> 최저임금근로자가 '있는' 가구 가운데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단위 : 가구수, %)

근로 장려금	평균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수급	13,772	1.1	19,616	1.7	13,166	1.1	13,832	1.4	8,704	0.6	13,543	1.0
비수급	1,195,733	98.9	1,161,844	98.3	1,174,332	98.9	977,094	98.6	1,366,084	99.4	1,299,313	99.0

<표 4-4> 최저임금근로자가 '없는' 가구 가운데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단위 : 가구수, %)

근로 장려금	평균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빈도	비율										
수급	81,174	0.5	54,309	0.3	97,666	0.6	63,439	0.4	115,175	0.7	75,250	0.4
비수급	17,102,665	99.5	16,331,144	99.7	16,844,936	99.4	17,447,417	99.6	17,232,865	99.3	17,656,975	99.6

V. 결론

- 본 연구는 근로장려금의 노동공급 성과를 평가하고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의 관계 및 상대적 실효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왔음
- 먼저 노동공급 효과를 보기 위해 18세미만 자녀가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와 총소득과 주택 및 재산 요건이 유사한 집단을 선정하였음
-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성급하지만 처리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취업자 수 증가를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었음
 - 보다 분명한 결론은 보다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통해 가능할 것임
- 근로장려세제와 최저임금제의 관계 및 상대적 실효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일단 근로장려세제에 다소 유리한 증거들이 관찰되었음
 - 먼저 근로장려금이 포함되는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한 총소득인 경상소득을 10개의 동일한 구간으로 구분하여 각 제도 수혜자들이 어떤 구간에 주로 속하는 지를 알아보았음
 - 그 결과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가구들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있는 가구에 비해 2분위와 3분위의 소득구간에 집중되어 있어 근로빈곤층을 비교적 잘 포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근로장려금 수급 총액과 동일한 금액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임금에 정률로 보태줄 경우의 성과와 결합된다면 보다 적극적인 해석으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임

참고문헌

- 기재량·김진희·김재호, 「근로장려세제가 수급자의 시간당 임금에 미치는 효과」,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5권 제3호, pp. 289~312 (23pages), 2015.
- 김대일·이철희·김봉근·이철인(2011), 「저숙련·저임금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촉진 제도의 효과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정책연구용역사업
- 김재진·이상은·이철인(2014), 「조세지출(근로장려세제) 종합 심층평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김재인·이혜원(2012), 「근로장려세제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연계방안」, 연구보고서 12-0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남재량(2013), “근로장려금 지급의 고용성과 평가,” 『임금보조금의 고용성과 평가 및 과제』(남재량·박성재·성재민), 기획재정부
- 박종선·황덕순(2016),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유인효과: 심적회계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소비자학회』 제27권 제1호
- 박한순(2016),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의 소고」,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제5권 제2호
- 안종석·송헌재·홍우형(2017), 「근로·자녀장려금제도 성과분석 및 운영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이대웅·권기현·문상호(2015), 「근로장려세제(EITC)의 정책효과에 관한 연구-성향점수 매칭(PSM) 이중, 삼중차이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4(2), 27-56.
- 이철인(2016), 「청년고용촉진장려금 효과 분석」, 노동경제논집, 제39권 제4호
- 정찬미·김재진(2015),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기준 변경과 자녀장려세제(CTC) 도입이 홀벌이 및 맞벌이가구의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 『사회보장연구』 제31권 제1호, pp.233~253.
- 한상운·성주호, 「연금연구: 두루누리사회보험이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연금연구, 3(1), 23-40 (2013).
- 홍민철·문상호·이명석, 「근로장려세제 효과 분석: 경제활동참여, 근로시간 및 개인별 빈곤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6권 제2호, pp.1~27, 2016
- Baughman, R., & Dickert-Conlin, S. (2003). Did expanding the eitic promote motherhood?.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3(2), 247-251.
- Dahl, M., DeLeire, T., & Schwabish, J. (2009). Stepping stone or dead end? The effect of the EITC on earnings growth. National tax journal, 329-346.
- Eissa, N., & Hoynes, H. W. (2006). Behavioral responses to taxes: Lessons from the EITC and labor supply. In Tax Policy and the Economy, Volume 20 (pp. 73-110). The MIT Press.
- Grogger, J. (2003). The effects of time limits, the EITC, and other policy changes on welfare

- use, work, and income among female-headed famili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5(2), 394-408.
- Grogger, J. (2004). Welfare transitions in the 1990s: The economy, welfare policy, and the EITC.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23(4), 671-695.
- Holtzblatt, J. (1991, January). Administering Refundable Tax Credits: Lessons from the EITC Experience. In *Proceedings of the Annual Conference on Taxation Held under the Auspices of the National Tax Association-Tax Institute of America* (Vol. 84, pp. 180-186). National Tax Association.
- Holtzblatt, J., McCubbin, J., & Gillette, R. (1994). Promoting Work through the EITC. *National Tax Journal*, 47(3), 591-607.
- Hotz, V. J., & Scholz, J. K. (2000). Not perfect, but still pretty good: the EITC and other policies to support the US low-wage labour market. *OECD Economic Studies*, 31(1), 25-42.
- Meyer, B. D. (2002). Labor supply at the extensive and intensive margins: The EITC, welfare, and hours worked.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2(2), 373-379.
- Neumark, D., & Wascher, W. (1999, November). Using the EITC to increase family earnings: New evidence and a comparison with the minimum wage. In *Joint Center for Poverty Research Conference on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Early Findings*, Evanston, IL.
- Neumark, D., & Wascher, W. (2000). Using the EITC to Help Poor Families: New Evidence and a Comparison with the Minimum Wage (No. w7599).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Neumark, D., & Wascher, W. (2007). Minimum Wages and Low-Wage Workers: How Well Does Reality Match the Rhetoric. *Minn. L. Rev.*, 92, 1296.
- Neumark, D., & Wascher, W. (2007). Minimum wages,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employment: evidence from the post-welfare reform era.
- Neumark, D., & Wascher, W. (2011). Does a higher minimum wage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Industrial & Labor Relations Review*, 64(4), 712-746.
- Porter, K. (1998). Strengths of the safety net: How the EITC, social security and other government programs affect poverty.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 Romich, J. L., & Weisner, T. (2000). How families view and use the EITC: Advance payment versus lump sum delivery. *National tax journal*, 1245-1265.
- Rothstein, J. (2010). Is the EITC as good as an NIT? Conditional cash transfers and tax incidence.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177-208.
- Smeeding, T. M., Phillips, K. R., & O'Connor, M. A. (2000). The EITC: Expectation, knowledge, use, and economic and social mobility. Center for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13).

<부표 3-1>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여부에 따른 가구 경상소득 분위별 분포 : 13~17차

(단위 : 가구수, %)

분위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13차)				근로장려금 비수급가구 (13차)			
	빈도	백분율	누적	누적	빈도	백분율	누적	누적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	14,900	20.9	14,900	20.9	1,702,818	10.0	1,702,818	10.0
2	9,169	12.9	24,070	33.8	1,711,045	10.0	3,413,863	19.9
3	8,673	12.2	32,743	46.0	1,707,625	10.0	5,121,488	29.9
4	14,792	20.8	47,535	66.8	1,701,668	9.9	6,823,155	39.9
5	6,187	8.7	53,722	75.5	1,717,116	10.0	8,540,271	49.9
6	5,656	8.0	59,378	83.4	1,714,366	10.0	10,254,636	59.9
7	9,796	13.8	69,174	97.2	1,710,380	10.0	11,965,016	69.9
8	1,985	2.8	71,159	100.0	1,714,963	10.0	13,679,980	79.9
9	0	0.0	71,159	100.0	1,720,529	10.1	15,400,508	90.0
10	0	0.0	71,159	100.0	1,720,123	10.1	17,120,631	100.0
분위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14차)				근로장려금 비수급가구 (14차)			
	빈도	백분율	누적	누적	빈도	백분율	누적	누적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	5,314	4.8	5,314	4.8	1,772,570	10.0	1,772,570	10.0
2	9,781	8.8	15,095	13.6	1,769,223	10.0	3,541,793	20.0
3	22,290	20.1	37,385	33.7	1,757,907	9.9	5,299,700	30.0
4	24,614	22.2	61,999	55.9	1,755,418	9.9	7,055,118	39.9
5	26,333	23.8	88,331	79.7	1,752,648	9.9	8,807,766	49.8
6	16,246	14.7	104,577	94.3	1,760,748	10.0	10,568,514	59.8
7	6,285	5.7	110,862	100.0	1,773,434	10.0	12,341,947	69.8
8	0	0.0	110,862	100.0	1,779,057	10.1	14,121,004	79.9
9	0	0.0	110,862	100.0	1,781,736	10.1	15,902,740	89.9
10	0	0.0	110,862	100.0	1,779,321	10.1	17,682,061	100.0
분위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15차)				근로장려금 비수급가구 (15차)			
	빈도	백분율	누적	누적	빈도	백분율	누적	누적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	2,286	3.0	2,286	3.0	1,816,915	10.0	1,816,915	10.0
2	24,311	31.5	26,597	34.4	1,793,543	9.9	3,610,457	19.9
3	12,857	16.6	39,454	51.1	1,809,678	10.0	5,420,136	29.9
4	13,362	17.3	52,816	68.4	1,807,047	10.0	7,227,183	39.9
5	3,218	4.2	56,034	72.5	1,816,951	10.0	9,044,134	49.9
6	17,805	23.0	73,839	95.6	1,798,507	9.9	10,842,640	59.8
7	0	0.0	73,839	95.6	1,822,776	10.1	12,665,416	69.9
8	3,432	4.4	77,271	100.0	1,815,414	10.0	14,480,830	79.9
9	0	0.0	77,271	100.0	1,822,281	10.1	16,303,111	90.0
10	0	0.0	77,271	100.0	1,820,612	10.1	18,123,723	100.0
분위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16차)				근로장려금 비수급가구 (16차)			
	빈도	백분율	누적	누적	빈도	백분율	누적	누적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	0	0.0	0	0.0	1,843,550	10.1	1,843,550	10.1
2	16,768	13.5	16,768	13.5	1,827,930	10.0	3,671,480	20.0
3	43,224	34.9	59,992	48.4	1,800,358	9.8	5,471,838	29.9
4	9,988	8.1	69,980	56.5	1,834,115	10.0	7,305,953	39.9

5	21,338	17.2	91,319	73.7	1,819,308	9.9	9,125,261	49.8
6	9,479	7.7	100,798	81.4	1,838,275	10.0	10,963,536	59.9
7	15,262	12.3	116,059	93.7	1,829,730	10.0	12,793,265	69.8
8	5,453	4.4	121,513	98.1	1,835,690	10.0	14,628,955	79.9
9	0	0.0	121,513	98.1	1,846,362	10.1	16,475,317	89.9
10	2,366	1.9	123,879	100.0	1,843,340	10.1	18,318,657	100.0
분위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17차)				근로장려금 비수급가구 (17차)			
	빈도	백분율	누적 빈도	누적 백분율	빈도	백분율	누적 빈도	누적 백분율
1	1,418	1.6	1,418	1.6	1,876,967	10.0	1,876,967	10.0
2	41,682	46.9	43,100	48.5	1,835,539	9.8	3,712,506	19.9
3	9,741	11.0	52,841	59.5	1,868,451	10.0	5,580,957	29.9
4	9,704	10.9	62,545	70.4	1,869,710	10.0	7,450,667	39.9
5	21,045	23.7	83,591	94.1	1,856,311	9.9	9,306,979	49.8
6	3,929	4.4	87,520	98.6	1,875,204	10.0	11,182,182	59.8
7	1,274	1.4	88,794	100.0	1,878,196	10.1	13,060,378	69.9
8	0	0.0	88,794	100.0	1,877,101	10.0	14,937,479	79.9
9	0	0.0	88,794	100.0	1,878,765	10.1	16,816,245	90.0
10	0	0.0	88,794	100.0	1,879,517	10.1	18,695,761	100.0

<부표 4-1> 최저임금근로자 유무에 따른 가구 경상소득(공적이전소득 제외 총소득) 분위별 분포 : 13~17차
(단위 : 가구수, %)

분위	최저임금근로자가 있는 가구 (13차)				최저임금근로자가 없는 가구 (13차)			
	빈도	백분율	누적 빈도	누적 백분율	빈도	백분율	누적 빈도	누적 백분율
1	172,438	14.7	172,438	14.7	1,545,281	9.7	1,545,281	9.7
2	192,662	16.4	365,100	31.2	1,527,552	9.5	3,072,833	19.2
3	179,013	15.3	544,112	46.4	1,537,285	9.6	4,610,118	28.8
4	181,639	15.5	725,752	61.9	1,534,820	9.6	6,144,939	38.4
5	153,158	13.1	878,909	75.0	1,570,145	9.8	7,715,083	48.2
6	90,060	7.7	968,970	82.7	1,629,962	10.2	9,345,045	58.3
7	53,313	4.6	1,022,282	87.2	1,666,863	10.4	11,011,908	68.7
8	62,228	5.3	1,084,510	92.5	1,654,720	10.3	12,666,628	79.1
9	52,392	4.5	1,136,902	97.0	1,668,137	10.4	14,334,765	89.5
10	35,208	3.0	1,172,110	100.0	1,684,915	10.5	16,019,680	100.0
분위	최저임금근로자가 있는 가구 (14차)				최저임금근로자가 없는 가구 (14차)			
	빈도	백분율	누적 빈도	누적 백분율	빈도	백분율	누적 빈도	누적 백분율
1	169,904	14.3	169,904	14.3	1,607,980	9.7	1,607,980	9.7
2	205,884	17.3	375,788	31.7	1,573,120	9.5	3,181,100	19.2
3	186,309	15.7	562,097	47.3	1,593,888	9.6	4,774,988	28.8
4	153,821	13.0	715,918	60.3	1,626,211	9.8	6,401,199	38.6
5	108,358	9.1	824,276	69.4	1,670,623	10.1	8,071,821	48.6
6	117,655	9.9	941,931	79.3	1,659,339	10.0	9,731,160	58.6
7	67,832	5.7	1,009,763	85.0	1,711,886	10.3	11,443,046	68.9
8	70,598	6.0	1,080,361	91.0	1,708,459	10.3	13,151,505	79.2
9	47,117	4.0	1,127,478	95.0	1,734,619	10.5	14,886,124	89.7
10	60,021	5.1	1,187,498	100.0	1,719,300	10.4	16,605,424	100.0
분위	최저임금근로자가 있는 가구 (15차)				최저임금근로자가 없는 가구 (15차)			

	빈도	백분율	누적	누적	빈도	백분율	누적	누적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	142,610	14.4	142,610	14.4	1,676,590	9.7	1,676,590	9.7
2	162,861	16.5	305,471	30.9	1,654,993	9.6	3,331,583	19.4
3	127,970	12.9	433,441	43.8	1,694,566	9.9	5,026,149	29.2
4	131,955	13.3	565,396	57.2	1,688,453	9.8	6,714,602	39.0
5	84,812	8.6	650,208	65.7	1,735,357	10.1	8,449,959	49.1
6	106,717	10.8	756,925	76.5	1,709,595	9.9	10,159,555	59.0
7	112,747	11.4	869,672	87.9	1,710,029	9.9	11,869,584	69.0
8	52,676	5.3	922,348	93.2	1,766,170	10.3	13,635,753	79.2
9	30,334	3.1	952,682	96.3	1,791,946	10.4	15,427,700	89.6
10	36,663	3.7	989,345	100.0	1,783,949	10.4	17,211,649	100.0
분위	최저임금근로자가 있는 가구 (16차)				최저임금근로자가 없는 가구 (16차)			
	빈도	백분율	누적 빈도	누적 백분율	빈도	백분율	누적 빈도	누적 백분율
1	166,847	12.3	166,847	12.3	1,676,703	9.8	1,676,703	9.8
2	245,547	18.1	412,394	30.4	1,599,152	9.4	3,275,855	19.2
3	143,973	10.6	556,367	41.1	1,699,609	10.0	4,975,463	29.1
4	177,036	13.1	733,403	54.1	1,667,068	9.8	6,642,531	38.9
5	141,470	10.4	874,872	64.6	1,699,176	9.9	8,341,708	48.8
6	137,700	10.2	1,012,572	74.8	1,710,053	10.0	10,051,761	58.8
7	147,795	10.9	1,160,367	85.7	1,697,196	9.9	11,748,957	68.8
8	80,216	5.9	1,240,584	91.6	1,760,927	10.3	13,509,884	79.1
9	60,694	4.5	1,301,278	96.1	1,785,668	10.5	15,295,552	89.5
10	53,277	3.9	1,354,555	100.0	1,792,429	10.5	17,087,981	100.0
분위	최저임금근로자가 있는 가구 (17차)				최저임금근로자가 없는 가구 (17차)			
	빈도	백분율	누적 빈도	누적 백분율	빈도	백분율	누적 빈도	누적 백분율
1	158,038	12.1	158,038	12.1	1,720,347	9.8	1,720,347	9.8
2	285,962	21.9	444,001	33.9	1,591,259	9.1	3,311,605	19.0
3	205,776	15.7	649,777	49.7	1,672,417	9.6	4,984,022	28.5
4	129,239	9.9	779,016	59.5	1,750,175	10.0	6,734,197	38.5
5	118,511	9.1	897,527	68.6	1,758,846	10.1	8,493,042	48.6
6	78,074	6.0	975,601	74.6	1,801,059	10.3	10,294,101	58.9
7	98,221	7.5	1,073,822	82.1	1,781,249	10.2	12,075,350	69.1
8	113,270	8.7	1,187,092	90.7	1,763,831	10.1	13,839,181	79.2
9	65,902	5.0	1,252,994	95.8	1,812,863	10.4	15,652,045	89.6
10	55,463	4.2	1,308,457	100.0	1,824,054	10.4	17,476,098	100.0